



대한공증인협회 주요 회무

(2016. 1. 1. ~ 2016. 12. 31.)

공증업무 질의 ·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의 소송대리범위에 대한 질의 관련 회신

□ 질의내용

<사건개요>

공증 촉탁인들(이하 청구인과 상대방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청구서를 제출한 이후 협의이혼에 따른 합의를 작성하고자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합의를 작성한 이후 인증을 받아 수령한 이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를 마친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작성하여 인증받은 합의서가 무효라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따라 상대방은 합의를 인증받았던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한 이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으로 공증인가 법무법

인 공증담당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위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를 인증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그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요?
2. 공증인법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제한되는 소송업무와 공증업무는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제한되는지요?

□ 회신내용

1. 본 건 질의요지는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포함한 협의이혼에 따른 합의를 인증한 법무법인이 그 합의서의 무효를 다투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청구인의 상대방을 위한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2. 변호사법 제51조는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

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는 법무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다음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만 아니면 법무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2. 어음, 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補充紙)에 강제집행할 것을 적은 증서를 작성한 사건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라 정관을 인증한 사건

3. 위 규정에 따르면 귀 법무법인이 그 인증한 합의서에 관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어느 일방으로부터 사건을 수입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일응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의 내용에 따르면 귀 법무법인은 위 합의서에 대하여 인증하는 형식으로 공증을 하였지만 단순히 인증한 것에 그친 경우가 아니라 위 합의서 작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형식상으로는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1호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합의서 작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공증을 하든 공증인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공증을 하든 실질적으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귀 법무법인은 비록 합의서를 인증한 경우에 불과할지라도 그 합의에 관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2016년도 협회 주요 활동

1 공증전담변호사 제도 신설 추진 관련 협회 측 의견 법무부에 제시

- 법무부가 인가공증인 내에 공증업무 외 송무 등 다른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임명공증인과 같이 공무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게끔 겸직이 금지되는 ‘공증전담변호사’를 별도로 지정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증전담변호사 제도 도입은 변호사 겸업 공증제도에서 출발한 인가공증인제도 도입 본질에 어긋난다는 논란과 함께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직무의 법률적 취지에 맞는지에 관한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무부에서는 인가공증인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한 법률적 검토 후 공증전담변호사 제도 도입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협회 공식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함.
- 다음은 협회가 2016. 1. 27. 법무부에 제시했던 인가공증인 내 공증전담변호사 제도 신설 추진 관련 협회 측 의견으로서, 협회의 주요 회무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원문을 게재함.

◎ 협회 의견서 원문

법무부가 인가공증인 내에 공증업무 외에 송무 등 다른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임명공증인과 같이 공무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게끔 겸직이 금지되는 ‘공증전담변호사’를 별도로 지정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공증인법 개정을 검토 중인 사항과 관련하여,

- ① 인가공증인 제도 도입의 골자는 변호사 겸업 공증제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및 변호사법 제49조(법무법인 업무)에 따라 인가공증인 내에서 변호사로서 당연히 수행할 수 있는 여하한 직무에 있어 공증전담변호사는 완전히 배제시킨 채 오로지 공증인법 상의 공증인 업무에만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당초 인가공증인 제도 도입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 ② 인가공증인 입장에서 변호사로서의 여하한 업무를 하지 못하는 공증전담변호사를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로 두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법 제45조(구성원) 등에서 말하는 3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에서의 ‘변호사’로서 직무의 법률적 취지에 맞는지에 관한 논란과 함께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의 법률

적 충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 ③ 공증전담변호사에게 공무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도록 겸직을 금지할 경우 현재 겸직금지 규정 상 변호사를 휴업하고 있는 임명공증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증전담변호사도 변호사를 휴업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만일 변호사를 휴업해야 한다면 개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역시 될 수 없는 이유로 공증전담변호사도 될 수 없는 모순이 순환되어 애초 공증전담변호사 제도는 인가공증인제도 특성상 성립할 수 없는 제도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 ④ 중소 규모 인가공증인 입장에서는 공증전담변호사 제도를 신설할 경우 인가공증인 및 공증실 수익구조상 인가공증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이 명약관화하여 정부가 인가공증인으로 하여금 공증인가를 스스로 철회하라고 유도하는 것이나 진배없어 인가공증인의 기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귀 부에서는 인가공증인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한 법률적 검토 후 공증전담변호사 제도 도입 여

부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고, 인도집행증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대한공증인협회 조직 규정을 개선하며, 의사록의 인증을 면제하는 경미한 등기사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공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증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법무부가 2016. 11. 14.(월) 입법 예고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협회는 동 개정안 중 화상공증에 대하여, 상당수 회원들은 신원확인이나 촉탁 의사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제도를 도입할지라도 신원확인 방법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공증관련 알선행위의 벌금형에 관한 법정형 2천만 원 이하 규정 신설 개정안에 대하여도

변호사법의 경우와 같이 최소 3천 만원 이하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함.

- 다음은 협회가 2016. 12. 26. 법무부에 제시했던 입법예고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협회 측 의견으로서, 협회의 주요 회무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원문을 게재함.

◎ 협회 의견서 원문

대한공증인협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하오니 공증인법 개정 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증인법 제66조의2 관련

가. 제1항 관련

주주총회 대신 서면에 의한 결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등기실무상 그 경우 의사록 대신 등기신청서에 공증을 받지 않은 서면결의서를 첨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의사록에 해당하는 서면에 대하여 공증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뿐만 아니라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의사록에서도 발생하고 있음. 그러므로 「상법 제363조 제4항」은 「관계법령」

으로 고치는 것이 타당함.

나. 제4항 관련

- 1) 개정안은 의사록 인증을 할 때도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명백히 하는 내용이므로 사서증서 인증에 관한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은 의사록 인증에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함.
- 2) 그러므로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도 준용규정에 포함시켜야 함.

다. 제5항 관련

- 1) 관할 내 공증인의 부족으로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가 몰려 있는 매년 3월 공증인으로부터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는 동의함.
- 2) 그러나 직무집행구역 적용 배제는 공증인 정원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지방 회원을 중심으로 상당수 있음.

2. 공증인법 제66조의5 관련

가. 화상공증 제도의 도입에 대한 공증업계의 대체적 의견

- 1) 공증의 기본인 대면공증의 원칙에 반함.
- 2) 신원 확인이나 촉탁 의사 확인에 한계가 있음.
- 3) 공증인 정원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제도임.
- 4) 장기적으로 인공지능(기계)이 공증을 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5) 그러므로 화상공증 제도의 도입에는 반대 또는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 6)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신원 확인 방법에 제한을 두어서 미리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하여 화상공증의 촉탁인이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
- 7) 특히 상당수의 임명공증인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정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안 규정에 관한 검토

「공증인 앞에서(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공증인 앞에서(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대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공증인 앞(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서」로 규정하는 것이 뜻이 분명해 보임.

3. 공증인법 제87조의2 관련

공증관련 알선행위 등을 처벌할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의 법정형이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법정형과 비교할 때 개정안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최소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㉓ 공증인수수료 준수 촉구 안내

○ 일부 지역에서 주식회사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과 관련하여 미리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검사하는 수수료에 대한 할인을 미끼로 공공연히 사건을 유치한다거나, 번역문 인증 시 윈스톱서비스와 수수료할인을 표방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있다는 풍문 등과 관련하여, 협회는 조사위원을 확충하고 공증인법 제78조에 따라 공증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 일부를 협회장에게 위탁하도록 요청하는 등 공증 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수수료 할인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회원들에게 공증인수수료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각 회원

사무소에 2016. 2. 5.자 공문으로 안내함.

4 의사록인증지침 준수 촉구 안내

- 의사록 참석인증 촉탁과 관련하여 검사 수수료 할인을 내세워 사건을 유치하거나, 일부 상장회사가 검사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공증사무소를 찾아다니면서 이른바 촉탁 쇼핑을 하고 있다는 제보와 관련하여, 공증인 본직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수료 할인행위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록인증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검사 수수료 등을 본직이 직접 확인한 후 정당한 수수료의 지급을 촉탁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줄 것을 각 회원사무소에 2016. 2. 26. 자 공문으로 안내함.
- 특히 공증사무소 밖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직의 직무집행구역(원칙적으로 소속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이나,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임)을 벗어나서는 아니 되므로 다른 직무집행구역으로 출장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청함.
- 또한 공증인이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검사한 경우에 지급받아야 하는 검사 수수료에 관하여 아래

와 같은 설명자료를 덧붙여 안내함.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에 대한 검사 수수료에 관하여>

- ◎ 법인의사록 인증을 위하여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한 경우 검사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산출됩니다(법인의사록인증지침 제13조).
- ◎ 즉, 검사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 원까지는 100만 원으로 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자본금을 의미하지만 법인총회의 결의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의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 ◎ 따라서 결의일 당시 법인의 자본금이 13억 83,333,333원 이상이면 모두 300만 원이 됩니다 { 1,000,000원 + (1,383,333,333원 - 50,000,000원) × (3 ÷ 2,000) = 3,000,000원 }.

○ 다시 말하여 자본금이 20억 원이 안 된 상장회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상장회사의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검사는 모두 300만원이 될 것입니다.** 만일 자본금이 없는 법인이라면, 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검사 수수료는 100만 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증인수수료규칙 제19조의2에서는 자본금 5천만 원까지는 100만 원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법무부장관 예방

○ 2016년도 상반기 법무부 인사이동 등에 따른 공증 업무 실무진과 협회 임원 간 상견례를 겸한 공증 제도 현안 관련 환담을 위하여 유원규 협회장 등 임원 5명은 법무부장관을 2016. 2. 25. 예방하고, ① 협회 조사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한 법무부 차원의 감독권한 일부 위탁 요청, ② 공증인 직역 확대 강화 협조, ③ 법무부 차원의 공증실무제요 발간 요청, ④ 법무부와 협회 간 업무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협조 강화 등을 건의함.

6 제10회 공증주간 설정 및 공증인 보조자 교육 시행

○ 협회는 법무부와 공동 주최로, 공증 제도가 사인간 거래 시 증거 남기는 문화를 확산시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예방하며, 약속이 지켜지는 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법질서 바로 세우기의 중요한 수단임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기 위하여 2016. 9. 19.(월)~23.(금)까지를 “제10회 공증주간”으로 설정,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포, 홍보 현수막 게시, ‘유언공증 등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문제’를 주제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강연 등을 실시함.

○ 특히 제10회 공증주간을 맞아 협회가 추천한 유공 공증인 3명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함. 다음은 유공 공증인 및 주요 공적 사항.

① 유정주 변호사

[사법연수원 3기,70세, 임명공증인 / 공증인서부합동사무소]

- 대한공증인협회 감사 (2010~현)
- 대한공증인협회 조사위원회 위원장(2015~2016)
- 수수료 할인 등 불법적인 공증 유치행위, 비대면 공증 등 공증인법위반행위를 자체 확인하여 공증체도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에 기여

② 이봉상 변호사

[사법연수원 21기,52세, 공증담당변

호사 / 법무법인(유한) 화우]

- 전 대한공증인협회 재무이사 (2008~2016)
- 협회비 등 재무구조 개선과 공증수수료 제도 개선에 기여

③ 법무법인 한중[인가공증인]

- 1998년 설립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전 대표변호사 송정호 변호사가 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제공증인협회 회원 가입(2010) 및 공증인법 개정(2013)에 적극 협조하여 공증제도 발전에 기여

- 또한 제10회 공증주간을 기념하고 공증인법 제77조의8(회원 연수 등) 규정에 따라 공증인 보조자의 직무수행 능력 제고와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2016년도 공증인 보조자 교육”을 2016. 9. 21.(화) 14:00~18:00 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층 대강당에서, ① 공증인법 개관 및 질의에 대한 설명, ② 공증감사 지적사항 설명, ③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처리지침 해설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동 교육에 전국 총 232개 회원 사무소의 공증인 보조자 236명(각 사무소별 1명. 단, 4개소는 2명 참석)이 참석.

7 공증인증 및 공증인사무직원 신분증 제작·배포

- 2016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임명공증인 회원 및 공증인사무직원 신분증 발급 사업이 원활히 집행되어, 216. 12. 31. 기준 임명공증인 신분증은 35명, 공증인사무직원 신분증은 355명의 신청을 받아 각 신분증이 발급됨(발급 비율은 임명공증인 45%, 사무직원 42% 수준).

8 2016년도 「공증과신뢰(구, 대한공증협회지)」(통권 제9호) 발간

- 협회 기관지 『공증과신뢰』 2016년도 통권 제9호 시론으로 “공증의 예방사법적 기능의 강화(김주덕 수석부협회장)”를, 특집에 집행증서의 법률관계(박상진 공증인), △ 공증서류 보존과 개선 방안(남상우 법제이사)를, 논단으로 △ 어음행위의 위법, 무효와 어음공정증서 작성(한정화 공증인), △ 미국의 공증제도와 등기제도 소개(이상석 부협회장)을, 단상에 △ 변호사공증제도 도입의 비화(박형연 변호사)를, 수필에 △ 하루에 50그릇만 파는 식당(김길찬 공증인) 등의 원고와 함께 UINL 가입 7년을 돌아본 보고서, 법무부 지시사항 및 유권해석, 주요 회무 등을 게재, 2016. 7. 총 1,100부를 발간, 회원 및 법원·검찰·변호사회·국공립도서관·유관기관 등에 배포.

9 국제공증인협회 회원국 활동

○ 베트남 주최 2016년도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지역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2016. 9. 7.(수)~12.(월)까지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베트남공증인협회 주최로 개최된 2016년도 국제공증인협회(UINL)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정기회의에 김주덕 수석부협회장 등 임원 4명이 협회 대표로 참석, UINL 회장단과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읍서버로 태국 등 참가자들과 함께 공증인의 손해배상책임문제, 혼인과 상속 분야에서의 공증인의 역할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함.

○ 태국 법무부 공무원단 협회 방문

태국 법무부 공무원단이 태국의 공증인법 제정 및 공증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받고자 2016. 6. 2.(목) 협회를 방문, 한국 공증제도의 현황과 법령, 최근 새로 도입된 공증제도 등에 대한 환담을 나눔.

○ UINL 2016년도 정기총회 겸 제28차 국제공증인대회 참석

2016. 10. 16.(일)~23.(토)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16년도 국제공증인협회(UINL) 정기총회 겸 제28차 국제공증인대회에 김주덕 수

석부협회장과 안원모 부협회장이 협회 대표로 참석, UINL 신임 회장단 선출 등을 투표권 행사 및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

2016년도 협회 주요 회무 일지

- 2016. 1. 4. : 대한공증인협회장 한자 직인 폐기 및 신규 한글 직인 안내 / 법무부 및 회원
- 2016. 1. 25. : 제1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법무부의 인가 공증인 내 공증전담변호사 제도 신설 추진 관련 의견 재검토 ② 2016년도 사업계획(안) 검토 ③ 2015년도 일반회계 · 기금특별회계 결산서 및 2016년도 일반회계 · 기금특별회계 예산(안) 논의 ④ 2016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안) 승인 및 임원 등 선출절차 논의 ⑤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안) 논의 ⑥ 2016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제1차 이사회 개최 논의
- 2016. 1. 27. : 인가공증인 내 공증전담변호사 제도 신설 추진 관련 대한공증인협회 의견 송부 / 법무부
- 2016. 1. 28. : 2015년도 연수교육 상황 및 실적보고 / 법무부
- 2016. 1. 28. : 대한공증인협회 2016년도 임원 및 대의원 선출 후보자 등록 신청 안내 / 회원
- 2016. 1. 28. : 인가공증인 대표 변호사 및 공증담당변호사 현황, 공증실 연락처 등 최신 현황 파악 협조 요청 / 인가공증인 회원
- 2016. 2. 5. : 공증인수수료 준수 촉구 / 회원
- 2016. 2. 22. : 제1차 이사회 겸 제2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2016년도 사업계획 승인 (원안 의결) ② 공증인증규칙 제정 의결 (원안 수정 의결) ③ 공증인보조자신분증규칙 제정 의결 (원안 수정 의결) ④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안) 승인 (원안 의결) 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승인 (원안 수정 의결) ⑥ 2016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승인 및 임원 등 선임절차 승인 (원안 의결) ⑦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안) 동의 (원안 의결) ⑧ 조사위원회 위원 추천 후보 논의 (위임 의결) ⑨ UINL 이사회 이사 후보 등록 신청 안내 관련 논의 (위임 의결) ⑩ 제10회 공증주간 시 선포식 개최 및 법무부장관 표창 시행 여부 검토 논의 (위임 의결)
- 2016. 2. 26. : 의사록인증지침 준수 촉구 / 회원
- 2016. 3. 14. :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2016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협회장 선출 등 총회 의안에 관한 권고 (자문)
- 2016. 3. 28. : 2016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인증규칙 제정 의결 (원안 의결) ② 공증인보조

자신분증규칙 제정 의결 (원안 의결)
 ③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결산 승인 (원안 의결) ④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 승인 (원안 의결) ⑤ 총회 대의원 선출 (원안 의결) ⑥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원안 의결) ⑦ 임원 중 감사 (선출 의결) ⑧ 임원 중 협회장 선출 (총회 대안 의결) ⑨ 임원 중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 선임 승인권 운영위원회에 위임 (총회 대안 의결)

▶ **신임 협회장**

유원규 [법무법인 광장]

▶ **신임 감사**

최중현 [법무법인 효원]
 유정주 [공증인서부합동사무소]

▶ **신임 운영위원**

강수림 [성심종합 법무법인]
 김양남 [공증인가 여의도합동법률사무소]
 노승행 [법무법인 두레]
 송정호 [법무법인 한중]
 심일동 [공증인서부합동사무소]
 유경희 [법무법인 광장]
 이태운 [법무법인(유한)원]

▶ **신임 총회 대의원 명단(총 77개소)**

• **서울중앙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3개소)**
 공증인 김형민
 공증인 경향합동 법률사무소
 공증인가 소공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경원
 광화문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중
 동방종합 법무법인
 법무법인 두레
 법무법인 로투스
 법무법인 봄
 법무법인 새한양
 법무법인 서울제일
 법무법인 세창
 법무법인 송백
 법무법인 아시아
 법무법인 우원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하나
 법무법인 한강
 법무법인(유한) 한길
 법무법인(유한) 한별
 법무법인 한중
 법무법인 호민

• **서울동부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3개소)**

공증인 신문식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법무법인 하나로

• **서울남부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4개소)**

법무법인 강서
 남부종합 법무법인
 법무법인 다우
 법무법인 안민

• **서울북부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법무법인 북부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자유

• **서울서부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공증인 심일동
 공증인 서호

• **의정부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3개소)**

공증인 이병렬

법무법인 정언

법무법인 통일

• 인천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5개소)

공증인 김호영

공증인가 주안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명인

법무법인 부일

법무법인 해동

• 수원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8개소)

공증인 김병남

공증인 김재수

경희 법무법인

법무법인 누리

법무법인 대현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법무법인 우진

평택 법무법인

• 춘천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1개소)

공증인가 춘천합동 법률사무소

• 청주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대원종합 법무법인

법무법인 청주로

• 대전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3개소)

법무법인 대전제일 법률사무소

서도 법무법인

법무법인 홍주

• 대구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5개소)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 법률사무소

공증인가 팔공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가야종합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법률사무소

• 부산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4개소)

법무법인 구덕

법무법인 부산동부

법무법인 신성

법무법인 우리들

• 울산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공증인 서보석

법무법인 원울

• 창원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3개소)

공증인 강처목

공증인 석진국

경남 법무법인

• 광주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4개소)

공증인가 광주제일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주로평

법무법인 법가

법무법인 서석

• 전주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2개소)

공증인가 전주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백제

• 제주지검 소속 대의원 후보 (총 1개소)

법무법인 탐라

○ 2016. 4. 12. : 제3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인증 및 공증인보조자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지침(안) 논의 ② 공증업무(법인의사록 인증 수수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안) 논의 ③ UINL 임시총회 참석 여부 등 검토

○ 2016. 4. 12. :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임원 중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 선임 승인 (원안 의결)
- ▶ 신임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 명단
 - 부협회장

- 김 주 덕 [법무법인 태일] (수석)
- 김 중 환 [대전종합 법무법인]
- 안 원 모 [법무법인 한덕]
- 이 상 석 [공증인 이상석 사무소]

□ 상임이사

- 총무이사 (겸임)
- 안 원 모 [법무법인 한덕]
- 국제이사
- 박 광 빈 [법무법인(유한) 율촌]
- 회원이사
- 김 영 철 [법무법인 정세]
- 기획이사
- 김 건 수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 법제이사
- 남 상 우 [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
- 재무이사
- 김 승 훈 [법무법인(유한) 화우]

□ 감 사

- 최 중 현 [법무법인 효원]
- 유 정 주 [공증인 서부 합동사무소]

□ 이 사

- 백 수 일 [영남 법무법인]
- 현 영 두 [공증인 현영두 사무소]
- 김 태 우 [법무법인 국제]
- 홍 경 호 [모란 법무법인]
- 여 상 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김 영 곤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 이 경 우 [법무법인(유한) 한결]
- 박 기 응 [법무법인(유한) 에이팩스]
- 박 형 연 [법무법인 코리아]
- 이 용 철 [공증인 이영철 사무소]
- 한 정 화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 김 철 기 [법무법인 한미]

○ 2016. 4. 14. : UINL 임시총회 개최 의안에 관한 협회 측 의견 및 위임장 등 제출 / UINL

○ 2016. 4. 15. : UINL 산하 CTC(Themes and Congress Commission) 설문조사 답변에 대한 회신 / 일본공증인연합회

○ 2016. 4. 27. : 공증인증규칙 및 공증인보조자 신분증규칙 시행에 따른 신분증 발급 신청 안내 / 회원

○ 2016. 5. 23. : 제4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업무(구성원 정년에 따른 구성원 가입 시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안) 논의 ② UINL CAAs(아시아지역위원회) Sho Watanabe 재무담당 2017년도 CAAs 회의 한국 개최 제안 관련 논의 ③ 태국 법무부의 협회 방문 협조 요청 논의 ④ 제10회 공증주간 시행 관련 포스터 제작 방향 및 세미나 개최 여부 논의 ⑤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후보 추가 위촉 ⑥ 2016년도 공증과신뢰 통권 제9호 발간 진행 상황 논의

○ 2016. 6. 7. : 질의(구성원 정년에 따른 구성원 가입 시기에 대한 질의) 회신 / 공증인가
 ○ ○ 합동법률사무소

○ 2016. 6. 7. : 협회 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 ○
 ○ ○ 변호사

○ 2016. 6. 20. : 제5차 상임이사회 개최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업무(인가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의 소송대리

- 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안) 논의 ② UINL 이사회 이사 후보 등록 여부 등 관련 논의 ③ 베트남공증인협회 주최 제6차 UINL CAAs 정기회의(총회) 참가 논의 ④ 조사위원회 제 2015-1호 사건에 대한 법무부 징계 건의 이후 현황 검토
- 2016. 6. 28. : 질의(인가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의 소송대리 범위 관련) 회신 / 법무법인 ○○
 - 2016. 6. 30. : 2016년도 연회비 및 과년도 미납 연회비 납부 안내 / 회원
 - 2016. 7. 18. : 제6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협회 회칙 개정안 논의 ② 베트남공증인협회의 CAAs 위원장 임기 및 UINL 대륙별 부위원장 선출 관련 제안에 관한 논의 ③ 법인의사록 인증 대리 촉탁 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자의 위임장 제출 여부 법무부 설명자료 관련 논의 ④ UINL 이사회 이사 추천 후보 관련 재논의 ⑤ 제10회 공증주간 기념 국회의원과의 세미나 개최 관련 논의 ⑥ 공증실무제요 발간 검토 ⑦ 2016년도 공증과신뢰 통권 제9호 원고료 책정 · 지급 논의
 - 2016. 7. 18. : 2016년도 『공증과신뢰』 통권 제9호 배포(기증, 납본, 제공) / 회원 및 법무부, 검찰, 국 · 공립도서관, 법학전문대학원, 유관기관 등
 - 2016. 7. 29. : UINL 2017년도~2019년도 회기 이사회 이사 후보 추천 / UINL
 - 2016. 8. 17. : 제10회 공증주간 설정 및 대국민 홍보 협조 요청 / 법무부
 - 2016. 8. 17. : 제10회 공증주간 기념 “공증인 사무직원교육” 시행 교육장소 및 강사 협조 요청 / 법무부
 - 2016. 8. 22. : 제7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협회 회칙 개정안 재논의 ② 베트남공증인협회의 CAAs 위원장 임기 및 UINL 대륙별 부위원장 선출 관련 제안에 관한 재논의 ③ 비금융전문직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시 공증인 포함 여부 및 공증인의 비밀유지의무와의 충돌 여부 관련 논의 ④ 약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법적용대상에 공증인 또는 협회가 해당되는지 여부 논의 ⑤ 제10회 공증주간 포스터 · 리플릿 최종문안 검토 및 공증주간 관련 논의 ⑥ UINL 2016년도 정기총회 겸 제28차 국제공증인대회 참석 여부 검토 ⑦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 추천 논의
 - 2016. 8. 23. :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 추천 / 법무부

- 2016. 8. 30. : 제10회 공증주간 설정 및 대국민 홍보 협조 요청 / 회원
- 2016. 8. 30. : 제10회 공증주간 기념 “공증인 사무직원교육” 시행 및 참가등록 안내 / 회원
- 2016. 9. 1. : 공증 업무유공 표창 대상자 추천 / 법무부
- 2016. 9. 8. ~ 11. : UINL 2016 CAAs 베트남 정기회의 참석 / 수석부협회장, 총무이사, 국제이사, 국제위원
- 2016. 9. 19. ~ 23. : 제10회 공증주간 설정
- 2016. 9. 21. : 2016년도 공증인 사무직원 교육 시행 / 전국 232개 회원 사무소 공증인 보조자 236명 참석(4개소는 2명씩 참석)
- 2016. 9. 26. : 제8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업무(법인의사록 관련) 자료 요청 회신(안) 검토 ② 2016년도 베트남공증인협회 주최 CAAs 회의 결과 보고 및 관련 논의 ③ 법무부의 화상공증제도 도입 추진 관련 재논의 ④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 검토 ⑤ 영문사서증서 인증문 상의 “소속(영문 **Belong to**)” 표기 개정 필요성 검토 ⑥ 제2차 이사회 및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논의 ⑦ 2016년도 공증인 사무직원 연수교육 강사

수당 책정

- 2016. 10. 25. : 질의(법인의사록 관련 자료 요청 건) 회신 / 법무법인 ○○
- 2016. 10. 31. : 제2차 이사회 겸 제9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협회 회칙 개정안 의결 (원안 의결) ② 201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승인 (원안 의결) ③ 법무부가 추진 중인 화상공증제도 관련 제반 논의 (토론)
- 2016. 11. 3. : 화상공증 도입 관련 공청회 지정토론자 추천(남상우 법제이사) 협조 요청 회신 / 법무부
- 2016. 11. 4. : 2017년도 장부 조제 및 인증 신청 안내 / 회원
- 2016. 11. 14. :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201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및 의안에 관한 권고 (자문)
- 2016. 11. 21. :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회칙 중 일부 개정안 의결 (원안 의결)
- 2016. 11. 25. : 입법예고된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수렴 / 회원

- 2016. 11. 25. : 대한공증인협회 회칙변경인가 신청 / 법무부
- 2016. 12. 14. : 입법예고된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찬·반 의견 수렴 설문조사 / 회원
- 2016. 12. 19. : 제10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입법예고된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 논의
- 2016. 12. 26. : 입법예고된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협회 의견서 제출 / 법무부
- 2016. 12. 26. : 대한공증인협회 회원 가입의무 안내 / 입회절차 미이행 회원

2016년도 회원 입회 및 탈회 현황

○ 입회 현황 ○

(공증인 임명 및 공증사무소 설치인가 등)

❖ 공증인 김훈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15. 12. 30.(임기 : 2018. 6. 30.까지 / 정년)
- 소재지 : 서울 중구 퇴계로 131, 802호 (충무로2가, 신일빌딩)
(우) 04537
- 전 화 : 02-779-5581
- 팩 스 : 02-779-5584
- 입회일 : 2016. 1. 21.

❖ 공증인 박중욱 - 소속 서울남부지검

- 임명일 : 2016. 3. 7.(임기 5년)
- 소재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A동 316호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우) 08507
- 전 화 : 02-2694-8100
- 팩 스 : 02-2694-8101
- 입회일 : 2016. 4. 27.

❖ 공증인 안경재 - 소속 춘천지검

- 임명일 : 2016. 5. 9.(임기 5년)
- 소재지 : 강원 춘천시 공지로 293, 1층 (효자동, 화남빌딩)
(우) 24372
- 전 화 : 033-241-1441~2

- 팩 스 : 033-241-1440
- 입회일 : 2016. 6. 14.

❖ **공증인 허봉희 - 소속 광주지검**

- 임명일 : 2016. 5. 9.(임기 5년)
- 사무소 : 광주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광주 동구 중앙로196번길
15-4, 2층 (궁동)
(우) 61475

- 전 화 : 062-222-3500
- 팩 스 : 062-222-3501
- 입회일 : 2017. 2. 10.

❖ **공증인 성우경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16. 7. 1.(임기 5년)
- 사무소 : 세화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중구 무교로 15, 301호
(무교동, 남강빌딩)
(우) 04520

- 전 화 : 02-3481-4451 ~ 3
- 팩 스 : 02-747-3832
- 입회일 : 2017. 2. 8.

❖ **공증인 박종록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16. 8. 4.(임기 5년)
- 사무소 :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5,
405호 (서초동, 영포빌딩)
(우) 06595

- 전 화 : 02-776-5709
- 팩 스 : 02-3477-4418
- 입회일 : 2016. 8. 4.

❖ **공증인 양재환 - 소속 대구지검**

- 임명일 : 2016. 8. 9.(임기 5년)
- 소재지 :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 17,
201호 (사동, 세경빌딩)
(우) 38583

- 전 화 : 053-817-3007
- 팩 스 : 053-817-5008
- 입회일 : 2016. 8. 29.

❖ **공증인 예인수 사무소 - 소속 울산지검**

- 임명일 : 2016. 10. 5.(임기 5년)
- 소재지 : 울산 남구 법대로 95, 1층
(옥동)
(우) 44645

- 전 화 : 052-268-4411
- 팩 스 : 052-268-4407
- 입회일 : 2016. 10. 25.

○ **회원 탈회** ○

(공증인 면직 및 공증사무소 인가취소 등)

❖ **공증인가 새부산합동법률사무소**

- 소 속 : 부산지검
- 대 표 : 금동우 변호사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86,
502호 (거제동, 만해빌딩)
- 탈회일 : 2016. 1. 4.

❖ **법무법인 서정**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 표 : 김대웅 · 이홍복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9층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 탈퇴일 : 2016. 1. 25.

❖ **법무법인 안민**

- 소 속 : 서울남부지검
- 대 표 : 홍선식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구로구 도림로26길 10,
3층~4층 (구로동, 해맑은미소
빌딩)

· 탈퇴일 : 2016. 3. 31.

❖ **공증인 이원섭**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사무소 : 세화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중구 무교로 15, 301호
(무교동, 남강빌딩)

· 탈퇴일 : 2016. 7. 1.

❖ **공증인 이상완**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사무소 :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5,
405호 (서초동, 영포빌딩)

· 탈퇴일 : 2016. 8. 4.

❖ **법무법인 자유**

- 소 속 : 서울북부지검
- 대 표 : 김기준 · 오재훈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도봉구 마들로 764, 2층
(도봉동, 보성빌딩)

· 탈퇴일 : 2016. 9. 20.

❖ **공증인 유봉목**

- 소 속 : 울산지검
- 소재지 : 울산 남구 법대로 95, 1층
(옥동)

· 탈퇴일 : 2016. 11. 1.

❖ **법무법인 동명**

- 소 속 : 수원지검
- 대 표 : 유현주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105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 탈퇴일 : 2016. 11. 11.

❖ **공증인가 장안합동법률사무소**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 표 : 임윤태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 146-2, 3층
(종로3가, 동양빌딩)

· 탈퇴일 : 2016. 12. 1.

❖ **중도 법무법인**

- 소 속 : 대전지검
- 대 표 : 문정두 · 송진윤 · 이강천 ·
이용 · 정덕진 변호사
- 소재지 : 대전 서구 문예로 73, 601호
(둔산동, 변호사회관)

· 탈퇴일 : 2016. 12. 9.

공증과신회 (2017 통권 제10호)

발행일 2017년 11월 1일
발행인 남 상 우
발행처 대한공증인협회
서울 서초구 법원로 1길 21, 403호~404호
(서초동, 변호사회관) (우)06595
전화 : (02)3477-5007
팩 스 : (02)3476-5551
전자우편 : koreanotary@naver.com

디자인 디자인 수
편집 전화 : (031)773-7526
전자우편 : design-soo@hanmail.net

Notary and Public Faith (Vol. 10 2017)

Published November 1, 2017
Publisher NAM Sang-Woo
Published by Korean Notaries Association
Address (Seocho-Dong, Lawyer's Hall)
#403~404, 21, Beobwon-ro 1-gil, Seocho-gu,
Seoul 06595, Republic of Korea
Tel. +82-2-3477-5007
Fax. +82-2-3476-5551
E-mail. koreanotary@naver.com